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3084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인 창작공간 4개소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재)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대 상 : 창작공간(4개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 창작공간(4개소) :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 사용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간)
 - ※ 최초허가 : 창작공간(4개소) '13.1.1.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7.1.1.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허가면적 : 토지 20,981.6㎡, 건물 연면적 10,617.8㎡
- 예상 감면액 : 약 507백만원 (시의회 동의 후 약 10개월분)

시 설 명	구분	내역		
		면적(㎡)	기준가격(천원)	1년간 예상 사용료(천원)
합계	토지	20,981.6	56,672,927	566,729
	건물	10,617.8	4,144,584	41,446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독산동)	토지	2,358.0	8,566,614	85,666
	건물	3,070.9	594,500	5,945
연희문학창작촌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6,915.0	23,103,135	231,031
	건물	1,480.2	133,141	1,331
서울무용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3,105.6	8,133,435	81,334
	건물	2,044.1	1,242,637	12,426
문래예술공장 (영등포구 문래동)	토지	1,017.0	4,368,015	43,680
	건물	2,832.4	1,979,890	19,79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양천구 신월동)	토지	7,586.0	12,501,728	125,017
	건물	1,190.2	194,416	1,944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창작공간 및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은 예술창작활동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예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市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
-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 문화본부 세출(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세입(사용료 징수)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12.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심의결과 : ‘조건부적정’

※ 조건 :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이광훈 (☎2133-2555)